

서울고등법원 2022. 3. 3 선고 2021나2023931 판결 [주식 매매대금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서울고등법원 2022. 3. 3 선고 2021나2023931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6. 24 선고 2019가합576156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충청

담당변호사 김성훈, 안종석

피고, 피항소인 B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율촌

담당변호사 맹주한, 박해성

변론종결 2022. 1. 13.

판결선고 2022. 3. 3.

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6. 24. 선고 2019가합576156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.

2.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주위적으로, 피고는 원고에게 2,0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. 6.

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반환하고, 주식회사 E에 위 주식반환사실을 통지하라(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).

이 유

1.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. 이에 이 법원이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

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나 C의 대표권남용 행위로 무효라면,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반환하고, E에 위 주식반환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.

그러나 피고가 1996년경 D와 체결한 이 사건 최초 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이상 그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0. 2. 28.자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 사건 주식을 적법하게 소유할 권리가 있다. 이와 달리 피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최초 계약이 체결되지

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.

한편 원고는 이 사건 최초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D와 피고가 서로 이 사건 계약을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이 사건 최초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1996. 9. 28. E에 이 사건 최초 계약서 등 서류를 접수하고, D 사망일 이후인 1997. 1. 31.경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D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점, 원고가 2009. 5. 18. E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피고가 2009. 12. 18. 위 소송에 독립당사자참가를 한 점(제1소송), 또한 피고가 2009. 7. 21. E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 및 주권의 교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(제2소송), C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업무를 위임하여 C으로 하여금 2010. 2. 11. 원고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게 한 점, 원고는 이 사건 협약 제3조에서 D가 그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생전에 피고에게 적법하게 양도하였음을 승인하고, 2010. 4. 22. 피고 측에 D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최초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(을 제4호증)를 작성해 준 점, 이후 원고는 2010. 9. 2.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제1소송에 관한 청구를 포기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최초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 되었다고 볼 수 없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,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영창, 판사 김세중, 판사 김종우

별지